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94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기웅 · 김승수 · 박성훈
김재섭 · 김기현 · 권영세
박충권 · 조지연 · 임종득
김소희 · 김석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방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

제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
- 10.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11.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u>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u>
<u><신 설></u>	<u>11.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u>
<u>10. (생 략)</u>	<u>12. (현행 제10호와 같음)</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